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행제한단속원 직무 규정의 상향입법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8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8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운행제한단속원 직무 규정의 상향입법 등 (안 제77조제8항 신설 등)	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888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운행제한단속원 직무 규정의 상향입법 등(안 제77조제8항 신설 등)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이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생략) <u><신설></u>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u> 1. 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을 위한 <u>차량의 유도 및 정차</u> 2. 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u>차량의 제원 측정, 적재된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등에 대한 조사</u> 3. 제78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u>재측정 요구</u> 4.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u>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u>

현행	개정안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u>자격, 직무범위</u>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행중지 요구</u>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직무</u> ⑨ -----<u>자격 등에 관하여</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중량·높이·폭·길이 등에 따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운행제한단속원도 차량의 적재량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²⁾에서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에 대해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으로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로관리원)은 23명이, 운행제한단속원은 일반국도 591명, 고속국도 2,375명(재정으로 1,245명, 민자도로 1,130명)이 직무를 수행 중임.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운전자에게 차량의 정차나 적재량 측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더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을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공무원 의제의

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구체적인 목적과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법상 권한·의무 또는 형사법상 책임 등을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09조도 운행제한단속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³⁾.

이에 비해 개정안은 특정 법률이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운행제한단속원이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단속업무의 실효성 확보, 운행제한단속원의 처우 개선 또는 단순히 직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가 운행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운행제한단속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17조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

3) 「도로법」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전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1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등을 위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80조에 따른 회차·적재물의 분리운송·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도로관리청은 제77조 위반자에 대해서 제96조에 따라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⁴⁾

이와 같이 현행법은 운행제한 위반 자체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의 요구 및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운행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벌칙·과태료 등 제재수단의 수준과 적용범위가 충분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4) 「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취지가 비공무원인 운행제한단속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면, 개정안의 공무원 의제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수당·신분 보장 등의 규정이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대법원은 과적단속원(운행제한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동일·유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은 과적단속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⁵⁾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23하,1863]

다만, 이는 다수의견의 요지이고, 5인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

(반대의견 요지) 국토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근로자인 국토관리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토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중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수당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려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기보다는 운행제한단속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의 주된 취지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면, 공무원 의제 규정 없이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운행제한단속원은 현행법 제77조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 제109조는 뇌물죄 적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직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괄적인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공무원 의제 부분은 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입법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115조에 따라 적재량 측정 방해 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벌칙 규정 등 이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운행제한단속원은 공무원직 등 근로자로서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협의 중이나, 공무원 간주는 타 공무원직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행제한단속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중인 공무원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간주시 급여, 노동3권, 고용 관련 쟁송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법무부

이미 엄결성(청렴, 결백 등)을 위한 측면에서 현행 도로법에 벌칙 적용시 운행제한단속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며, 민간근로자를 공무원으로 볼 경우 급여·노동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